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제8기 정기주주총회)

당사는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주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총회 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11시

2. 총회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성원빌딩) 14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호 보고 : 감사의 감사보고
- 제2호 보고 : 영업보고
- 제3호 보고 : 제8기(25.1.1~25.12.31)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3월 10일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 제2호 의안 : 감사 김한성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추천인	주요경력
김한성	1975년8월4일	신규선임	3년	이사회	인성디지탈 경영관리팀장 現) 에스넷시스템㈜ 경영관리팀장, 그룹 커뮤니케이션 담당

- 제3호 의안 : 2026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2026년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지난 제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소집통보서와 동봉된 위임장을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위임장 제출도 가능합니다.

5. 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날인),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

나. 대리 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6년 3월 11일

굿어스데이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8, 아이콘 역삼빌딩 5층

대표이사 전상현 (직인생략)

[별첨]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사외이사(독립이사로명칭 대체)에 대한 규정 부재에 따른 내용 추가 및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제542조의8 개정 내용을 반영
제3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 <제2항 신설, 기존 제2~제4항을 각각 제3항~5항으로 변경>
제40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 제40조2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신설 상법 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의 개정시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며(제1항), 독립이사 구성요건 강화에 대한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제2항)